

討論會 關聯 參考資料

- 지하철역사 신문판매대·매점 등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-



2003. 3. 24

서울特別市議會保健社會委員會

공공시설판매대우선사업자선정관련기본현황

1. 대상시설

- 시 및 소속기관 청사,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- 지방공사·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
2. 우선사업자(10㎡이하 시설에 한함)

순위	장애인	65세이상 노인	모자가정의 여성	독립유공자 유가족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장애등급 1~2급 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장애등급 3~4급 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◦ 미과세 대상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미과세 대상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순위자를 제외한 보호대상 모자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미과세 대상자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장애등급 5~6급 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◦ 미과세 대상자 			

주) 10㎡를 초과하는 매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실시

3. 지하철역사내 임대시설물 현황

(단위 : 개소)

구분	계	지하철공사	도시철도공사
계	947	561	386
음료수자판기	432	258	174
신문판매대	311	184	127
복권판매대	141	103	38
간이매점	63	16	47

공공시설판매대우선사업자선정관련법령

장애인복지법

第38條 (生業支援)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障礙人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財政經濟部長官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障礙人이 담배事業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障礙人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1.4.7>

③障礙人이 郵便法令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 障礙人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, 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

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·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,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障礙人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노인복지법

第25條 (生業支援)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設置·운영하는 公共施設안에 食料品·事務用品·新聞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賣店이나 自動販賣機의 設置를 許可 또는 委託할 때에는 65歲 이상의 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모자복지법

第15條 (公共施設內 賣店 및 施設設置)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운영하는 公共施設의 長은 그 公共施設안에 각종 賣店 및 施設의 設置를 許可하는 경우 이를 母子家庭 또는 母子福祉團體에 우선적으로 許可할 수 있다.

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
第16條 (就業保護) ①國家는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 就業保護를 실시한다. 다만, 獨立有功者의 遺族중 戶主承繼人인 孫子女가 疾病 또는 心身障礙나 高齡 등으로 인하여 就業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子女에 대하여 就業保護를 실시할 수 있다.

<개정 2000.12.30>

②獨立有功者와 그 配偶者를 제외한 就業保護對象者의 就業保護年齡과 家口당 就業保護人員數의 上限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保護를 함에 있어서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0條 내지 第34條·第36條·第37條·第38條第2項·第3項 및 第3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.<개정 1997.1.13>

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, 노인복지법 제25조, 모자복지법 제15조,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(이하 “신문판매대 등”이라 한다)를 설치·계약할 때에는 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)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, 모자가정의 여성, 독립유공자유가족(이하 “장애인 등”이라 한다)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1.01.05>

제2조(적용의 범위) 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㎡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.

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- 2.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- 3.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
제3조(사전공고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청)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- 1.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(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)
<개정 2000.07.25>
- 2. <삭제 2000.07.25>
- 3. 장애인수첩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, 독립유공자유가족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<개정 2001.01.05>

제5조(계약) <개정 2000.07.25> ①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,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.<개정 2000.07.25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,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.<개정 2000.07.25>

제6조(사업의 의무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,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사용료)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1.01.05>

第139回 臨時會 保健社會委員會
(2003. 2. 12)

條例適用施設 賃貸 關聯報告

- 음료수 자판기 · 신문판매대 · 복권판매대 · 매점 -

2003. 2

서울特別市地下鐵公社

I. 賃 貸 基 準

< 適 用 條 例 >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(1995.4.25제정)

- 對 象 施 設 : 신문판매대, 복권판매대, 음료수자판기, 간이매점(10m²이내)
- 對 象 者 :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, 모자가정의 여성, 독립유공자 유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- 賃 貸 方 法 : 공모에 의해, 대상자 중 우선순위별 신청·접수 후 추첨으로 당첨자에게 임대

[優 先 順 位]
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모자가정의 여성	독립유공자 유가족
1	장애등급이 1-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2	장애등급이 3-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 대상자	모자복지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자	미과세 대상자
3	장애등급이 5-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		

Ⅱ. 賃 貸 現 況

□ 총 561개소 중 임대운영 530개소, 미임대 31개소

(단위 : 개소)

구 분	대 상	임 대					미임대
		계	장애인	65세 이상 노 인	모자가정	독립 유공자	
계	561	530	296 (55.9%)	191 (36.0%)	43 (8.1%)	-	31
음료수자판기	258	246	140 (56.9%)	79 (32.1%)	27 (11.0%)	-	12
신문판매대	184	166	81 (48.8%)	73 (44.0%)	12 (7.2%)	-	18
복권판매대	103	102	60 (58.8%)	38 (37.3%)	4 (3.9%)	-	1
간 이 매 점	16	16	15 (93.8%)	1 (6.2%)	-	-	-

※ 미임대(31개소) : 미계약 22개소, 계약해지 9개소

[2002년도 말 임대시행]

○ 개 요 : 2002.12.31로 임대기간 만료된 음료수자판기, 신문판매대, 복권판매대의 3년간 운영자를 공모 추첨 임대

○ 시행내용

- 2002.11.19 : 운영자 모집 신문광고
- 2002.12. 2 ~ 12.6 : 신청자 접수(7,133명)
- 2002.12.11 : 전산 추첨
- 2002.12.12 : 당첨자 공고
- 2002.12.16 ~ 12.30 : 당첨자와 임대차 계약

Ⅲ. 運營實態 및 問題點

□ 運營實態

구 분	운 영 실 태
신문 판매 대	중간공급업체가 권역별로 신문을 독점 공급하고, 운영자는 단순 판매
음료수자판기	고가 기기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전문 유통업체에 의존 설치
복권 판매 대	최근 인터넷, 온라인 복권판매 증가 등으로 활자화된 복권 판매실적 감소로 수익저조
간이매점	역구내 동종업종과 경합으로 일부개소 수익 감소

□ 問題點

- 운영자 대부분이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운영하기 힘든 실정
 - 종업원 고용, 위탁운영 등으로 실질소득 저하
 - 유통업체 및 관련단체 신청, 운영 개입소지 요인 (무더기신청, 위탁운영, 명의 도용의혹 등)
 - ※ 조례 제6조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대리인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
 - 공사에서도 위 취지에 따라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허용
 - 종업원을 가장한 전대, 전매는 객관적 증거 확보 어려움으로 적발 곤란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초기 투입자금 부담으로 유통업체에 의존 (개입 빌미 제공)

- 신문, 재료 등 판매할 상품 자체 조달 곤란으로 유통업체 등 개입
- 대상자 중 “독립유공자”의 경우 연금수혜로
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
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지정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민원야기

KBS 언론 보도사항 (2002.12.12)

- 전문유통업체 등이 명의 도용 신청 및 대리운영 등 보도
- 서울시 감사관실 조사 중(2003.1.6 ~ 현재)
 - 불법전대, 전대, 위탁운영 여부
 -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진위 여부 등

공사에서 개선·조치한 사항 **2002년도 말 임대시행시**

- 신청서 접수 : 1인 1매 개별 접수(무더기 신청 방지)
- 신청서류 :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한정(관련단체 사전모집 행위 방지)
- 당첨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
(본인 직접 운영 유도)
- 임대료 납부 : 신문·복권판매대 1년 선납 → 분기별 선납(초기 자금부담 경감)
- 임대신청시 추첨보증금 예치제도 폐지(초기 자금부담 경감)
- 당첨자와 계약체결시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계약 체결
- 당첨자의 자격 진위 여부를 관할구청에 조회, 확인(미자격자 없음)

※ [향후 임대공모 계획] - 2003.4월 중(예정)

- 2003년 5 ~ 6월 중 임대기간 만료되는 임대시설과 미임대 시설

第139回 臨時會 保健社會委員會

(2003. 2. 12)

조례적용임대사업관련보고

2003. 02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조례적용임대사업 관련보고

I. 추진경위

- 1995. 4. 25 조례 제3181호 “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”제정
- 1995. 11월~2000. 11월 : 단계별 개통에 따른 공모실시 (총 11회)
- 2001. 10월 : 계약종료 31개소 임차인 재선정
- 2002. 05월 : 계약종료 25개소 임차인 재선정
- 2003. 02월 현재 총 386개소 임대운영

II. 임대현황

○ 임대기준

- 대상자 : 장애인, 65세이상노인, 모자가정여성, 독립유공자유가족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임대방법 : 대상자중 우선순위별 신청접수 후 공모추첨에 의한 당첨자 직영 (대리인, 종업원 가능)

○ 운영현황

구 분	계	장애인	65세이상노인	모자가정	독립유공자
계	386	269	98	18	1
신문	127	86	37	4	0
자판기	174	134	28	11	1
복 권	38	16	20	2	0
매 점	47	33	13	1	0

※ 임차인 직접 운영자 : 신문 9, 매점·복권 5, 음료수 15

Ⅲ. 운영실태 및 문제점

□ 운영실태

- 신문판매대 : 지역별 신문 유통업체에서 신문 공급
→ 단순판매상 역할
- 음료수자판기 : 임차인 고가 기기설치 부담, 고장조치 능력 미숙으로
민원유발 → 전문업체 의존
- 매점·복권 : 판매물품 단순, 외부상가 대비 상품가격 차등, 전자복권
등으로 수익저조

□ 운영관리

- 종업원 (대리인) 변경시마다 사전승인
- 매년 변경계약 체결시 임차인 직접 운영여부 확인
- 운영실태 지도점검
 - 일상점검(역), 분기점검(관리소), 특별 및 수시점검(본사)
- 운영허가증 (계약자 사진) 및 전대·전매금지 스티카 부착
 - 전대·위탁운영 적발로 계약해지 조치 (6건)

【 참고사항 】

- 계약해지 ('95 ~ '03 현재)

계	영업부진	전대·위탁운영	임차인사망	수급해제우려	기타
114건	74	6	25	5	4

- KBS언론 보도사항 ('02. 12. 12)
 - 유통업자가 명의 임의 도용 신청 및 대리운영 관계보도
 - 서울시 감사관실 조사중 ('03. 01. 06)
 - 대상자증명서 (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) 진위여부, 불법 전대, 위탁운영 여부

□ 문 제 점

- 중증장애인 등 거동 불능자에게 우선순위 부여
 - 종업원 고용이 필수적으로 실질소득 저조
 - 유통업체가 신청시부터 운영까지 개입 할 수 있는 여건 (무더기 신청, 대리운영 등)
- 종업원을 가장한 전대·전매 행위 증거 적발 곤란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초기 투입자본 부담
 - 자판기 구입, 물품구입 비용 부담으로 유통업체 의존
- 신문, 물품, 재료의 자체공급 곤란으로 유통업체 등 개입
- 단일품목 취급으로 수익성 저하로 운영포기

IV. 그 동안 개선 (조치)사항

- 신청 및 계약 체결시 전대·전매 방지 사전 공지
 - 무더기 신청 방지를 위한 1인 1매 개별접수
 - 전대·전매, 위탁 운영시 계약해지사항 개인별 안내
 - 계약체결 : 대리가능 (위임장 첨부) ⇒ 직접체결
- 신청 접수전 영업성 판단토록 현장확인 주지
- 계약 후 서울시(장애인복지과)로 계약 사실 통보
- 조례적용임대시설물 신청 간소화 (행정규제완화)
 - 추첨보증금 제도폐지 : 연간임대료의 5%를 신청시 납부
 - 서류간소화 : 신청시 (주민등록등본), 계약시 (호적등본)
- 임대료 납부 : 연간 선납 ⇒ 분기납 (향후 계획)

V. 개선대책(안)

□ 조례 적용 강화 및 절차개선

-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
 - 직접 운영가능자 또는 장애인 2급이상 일때 대리인 (조례), 종업원 (규정) ⇒ 직접 운영가능자 또는 대리인(민법 제777조)
- 공모절차 개선
 - 우선사업대상자 개별신청 ⇒ 우선사업대상자중 행정기관 추천자로 공모추첨
- 효 과 : 업체, 협회 등 개입 사전차단 및 실질적 수혜자 선정

【 향후 공모추진계획 】

계약기간	계	신문	음료수	복권	매점	비 고 (공모시기)
계	420	136	194	40	50	
'00.02.29~'03.02.28	11	5	6	0	0	'03년 5월
'00.08.01~'03.07.31	40	15	22	0	0	
'00.08.07~'03.08.06	10	4	6	0	0	
'00.08.15~'03.08.14	171	49	73	21	28	
'00.11.27~'03.11.26	82	23	37	10	12	'03년 10월
'00.12.15~'03.12.14	54	24	27	0	0	
'01.03.09~'04.03.08	8	3	5	0	0	
'02.01.01~'04.12.31	31	5	12	3	7	'04년
'02.07.02~'05.07.01	28	8	6	6	3	'05년

※ '03.5월 : 미임대 14건, 음료수자판기 신규 20개소 포함

※ 공모시기 조정 : 단계별 개통으로 계약기간 다양 ⇒ 계약기간 연장조정 (4단계 통합)

제공일자 : 2003 년 2 월 17 일

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감사관 조사담당관

사진없음■ 사진있음□ 매수 :

제 목 : 지하철 판매대 운영실태 조사결과

-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2003. 1. 3~2003. 1. 30까지 연 인원 417명을 투입하여 지하철역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·복권 판매대 및 매점 496개소 전체에 대해 적정 자격자가 운영하고 있는지와 신청서류가 적정하게 발급되고 있는지, 전문유통업자의 개입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.

- 조사결과, 첫째, 대부분 판매대에서 적격자가 본인 및 가족, 친인척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
 - 81개 판매대는 전문 유통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, 1개 판매대는 전매된 사실을 확인하였음

- 둘째, 신청서 위·변조 및 적정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번에 조사한 496개소의 당첨자 전원과 비당첨자중 주요구간 신청자 2,076건의 신청서류를 정밀 확인한 결과 서류 위·변조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
 - 복지단체 등에서 일괄 발급한 65건이 적출되었음

- 셋째, 전문유통업자 개입실태 확인에서는 2002년 12월에 지하철 공사에 신청한 서류 7,133건 중 4,181건(전체 접수신청의 58.6%)이 전문유통조직(신문중간도매상 등)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집단으로 접수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음. 금번에 확인된 사례를 살펴보면
 - 장애인단체, 사회복지관, 임대아파트 등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여 신청 및 계약과정을 지원하고 신문 등의 공급권을 확보하거나
 - 판매소중 적자가 나거나, 임대자가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임대자 스스로 전문유통업체에게 위탁운영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.

□ 금번 조사결과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은

- 지하철 판매대는 좁은 매장 및 소음 등 열악한 환경, 장시간 근무, 피크타임 집중 등으로 상당한 노동능력이 요구되나
- 1·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직접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
- 운영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, 판매대 당첨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은 그대로 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
 - 한편, 소득기준 초과를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서 제외시킬 경우에는 의료보호 및 영구임대 APT 입주혜택에서 제외되게 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

□ 제도개선 등 향후 조치계획

-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통보하여 판매대 부당운영으로 확인된 82건에 대해서는 단계별 절차를 거쳐서 계약해지 등 시정조치토록 하고
 - 현 운영자들의 판매대 운영사실을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검토토록 조치할 계획임.
- 그리고 서울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장애인 등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,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
 - 서울시 의회, 장애인 등 관련 단체,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개경쟁입찰 등 운영방식 개선과 이로 인한 수입금 증가분을 별도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투입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임

[참고사항]

- 신문판매대(295개)의 경우 대부분 5~600부 판매하여 현상유지 또는 30~40만원의 순수익을 내고 있음
 - ※ 2호선 강남 일부구간은 700부 이상, 6.8호선의 일부구간은 400부 이하
- 복권판매대(137개)는 비교적 수익이 좋은 편이나 최근 로또 열풍으로 수입 감소
 - ※ 일부 환승역 및 2호선 강남구간은 월 500만원 이상 수익 발생

지하철 판매대 임대 걱정여부 조사 결과

□ 조사 개요

- 조사대상 : 신문·복권 판매대 및 매점 496개소 전수조사
- 조사내용
 - 지하철 판매대 운영 걱정 여부
 - 신청서류 위·변조 및 걱정발급 여부
 - 전문유통업자 개입 실태 등

□ 지하철 판매대 운영실태

- 신문판매대(295개)의 경우 대부분 5~600부 판매하여 현상유지 또는 30~40만원의 순수익을 내고 있음
 - ※ 2호선 강남 일부구간은 700부 이상, 6.8호선의 일부구간은 400부 이하
- 복권판매대(137개)는 비교적 수익이 좋은 편이나 최근 로또 열풍으로 수입 감소
 - ※ 일부 환승역 및 2호선 강남구간은 월 500만원 이상 수익 발생

□ 조사결과

1. 판매대 운영자 걱정 여부

- 부당사례 82건 적출 (불법 전대 1, 전문유통업자 위탁운영 81)

2. 신청서 위·변조 및 걱정발급 여부

- 당첨자 전원 및 비당첨자 중 주요구간 신청자 2,076건의 신청서류를 정밀확인한 결과
 - 서류 위·변조 사례는 없었으나
 - 복지단체 등에서 일괄발급한 65건 적출

3. 전문유통업자 개입 실태

- 전문유통조직(신문중간도매상)의 조직적인 접수신청사실 확인

 - ※ '02.12월 지하철공사 신청서류 7,133건중 4,181건(전체 접수신청 58.6%)

- 장애인단체, 사회복지관, 임대APT 등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여 신청 및 계약과정을 지원하고 신문 등 공급권 확보

- 적자가 나거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전문유통업자에게 위탁운영을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됨

 - ※ 전문유통조직이 개입하는 이유는 일정 공급물량(7,000부 이상)을 유지하여 출판에서 후원을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고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.

□ 구조적 문제점

- 조례상 우선운영 대상자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영능력 제한

 - ※ 장애인 346명 중 306명(88.4%)이 1·2급 장애인이며, 노인 138명 중 101명(73.2%)이 70세 이상임

- 소수 당첨자에게만 혜택부여로 형평성 문제

- 판매대 당첨사실이 자치구에 통보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당첨으로 소득이 증가하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

 -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 발생

□ 조치의견

<조사결과 조치> - 지하철·도시철도공사

- 판매대 부당 운영 82건 ⇒ 단계별 절차를 거쳐서 계약해지 등 시정조치
- 현 운영자들의 판매대 운영사실을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검토토록 조치

<제도개선 검토> - 복지여성국

- 지하철 판매대는 당초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1995년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와 같이 장애인 등에게 운영권을 주고 있음
 - 그러나 실제 장애인 등에게는 큰 혜택이 없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음
- ⇒ 운영자 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실제 운영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자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하고
 - 입찰 결과 임대료 수입 증가분을 장애인 복지사업에 투입하는 방안 적극 검토
- ※ 다만 제도개선안은 복지여성국 주관하에 장애인단체, 관련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,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후 시행